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8.(목) 11:00 < 12. 19.(금) 조간 > 배포 2025. 12. 18.(목)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장벽 조사 실시 공고('25.12.19~'26.2.13)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붙임 참고)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송승희 (044-203-56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무역장벽 조사 공고문**

무역장벽 조사 공고

「대외무역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을 조사,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접수 바랍니다.

2025. 12. 19.
산업통상부장관

1. 개요

가. 조사목적

○ 「대외무역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무역장벽 및 애로를 발굴, (가칭)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나. 조사기간 : ’25. 12. 19. ~ ’26. 2. 13

다. 조사대상

○ (유형) 아래 17개 분야별 무역장벽 및 기업애로

-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TBT, SPS, 지식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환경, 노동, 경쟁정책, 디지털무역, 기타

○ (대상) 25개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 및 기타

- 미국, 중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러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 UAE, 카자흐스탄, 페루, 홍콩, 뉴질랜드

※ 위 25개 외 해소가 필요한 무역장벽이 있는 경우도 제출 가능

라. 유의사항

○ 본 조사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제한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 조사대상(유형)**에 해당하는 무역장벽 및 규제 관련 분야 중심으로 제출 요청드림.

※ (참고) 제도적 사안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 애로, 개별 기업의 단순 민원 또는 기업 내부 문제 등은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작성 양식)에 따라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미준수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되, 복수 교역상대 또는 여러 유형의 조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안별로 개별 양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람.

○ 조치의 차별성 또는 국제규범(WTO 등) 위반 가능성 판단을 위해 가능한 한 자국 기업/타국 기업과의 대우 차이 사례, 관련문서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의견은 정부 및 유관기관을 통해 검토될 예정이며, 제출 내용이 무역장벽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분석 및 보고서 반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 연락드릴 수 있으니 담당자,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 (참고) 모든 제출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계,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되며, 원자료는 정부 내부에서 엄격히 관리될 예정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붙임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4. 접수 및 문의처**에 명시된 부처 및 기관담당자 등에 전자메일로 송부

나. 신청기간 : ’25. 12. 19.(금) ~ ’26. 02. 13.(금) 18시까지

다. 진행 절차(안)

○ 무역장벽 조사 → 조사결과 분류·검토 → 보고서 작성(초안) → 검증 → 보고서 발간

라. 제출 서류 : 붙임 작성양식

3.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7조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조

4. 접수 및 문의처

○ 부처 담당자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
송승희 사무관(044-203-5626, tradebarrier25@korea.kr)

○ 기관 담당자 : 코트라 통상협력팀 권지연 과장
(02-3460-3242, tpc@kotra.or.kr)
무역협회 통상연구실(02-6000-5601, ys.jeon@kita.or.kr)

○ 무역장벽 작성 관련 문의 : 강준구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044-414-1058)

[붙임-작성 양식]

무역장벽 조사 양식

조치 개요	국가		유형※	
	업종※		현지 관련 기관	
	요지			
	관련 품목/산업	※ 농산품, 광산품, 공산품은 HS Code(HS 2022 기준)를,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등은 관련된 ISIC Code(Rev.4 기준)를 기재)		
	조치의 근거 법령			

무역투자 제한 조치의 세부 내용	○ - ○ - ○
업종영향 & 피해내용	○ - - ○
조치 철폐/개선의 필요성	① 상 () ② 중상 () **③ 중 ()** ④ 중하 () ⑤ 하 () [※ 선택 항목에 (○) 표시]
개선방안 제안 & 건의사항	○ ○

주1: ※ 조치의 유형은 다음 열거된 유형 중 하나를 기재.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TBT, ▷SPS, ▷지식재산권,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환경, ▷노동, ▷경쟁정책, ▷디지털무역, ▷기타

주2: ※ 업종은 다음 열거된 업종을 기재, ▷자동차/운송, ▷의료/바이오, ▷화학, ▷소비재(화장품), ▷소비재(의류), ▷가전제품, ▷건설/인프라/플랜트, ▷전기/전자, ▷철강/금속, ▷유통, ▷농림수산식품 / 해당사항 없을 시 기타

작성자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직 급			유선전화번호	
	성 명			휴대전화번호	

[각각의 제한 조치 유형별 예 또는 참고사항]

▷관세 : FTA 특혜관세(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나 WTO 최혜국(MFN)관세를 어기는 관세조치로, 일부 산업 분야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일부 국가의 관세 인상 조치 등

▷수입규제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입금지품목※ 외에 과도한 수입금지품목 적용(중고자동차, 중고의료기기 등), 수입허가(절차, 기간, 비용 등) 상의 애로, 관세할당제, 수입쿼터제, 수입면허제 등

※ 국가안보, 환경, 공공보건, 질서유지 및 국제조약 및 규범 준수 등을 위한 일부 품목

▷통관절차 : 수입품에 대한 자의적 HS코드 기준 적용(고관세로 분류 등),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통관 지연이나 통관 비용, 수입품(특정품목 포함) 통관 항구·공항 제한, 통관상 과도한 안보검사 등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시행·조사 내용 및 경과사항

▷보조금 : 수출 보조금, 전략산업 보조금, 제조업 분야의 산업 보조금

▷원산지규정 :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 FTA 특혜원산지 혜택을 저해하는 조치(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처리시간 지연 등), 협정상 FTA 사후 협정 적용 불이행 등

▷정부조달 : 국산품 우선 구매 정책, 비공개 입찰, 외국인에 대한 입찰정보 접근 제한(공고 지연, 자국어만 사용 등), 외국산 SW 정부조달 금지·제한 등

▷TBT :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인증, 라벨링, 화학물질 관리제도, 화장품 성분 인증 및 제품등록,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등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넘는 과도한 조치(복잡한 절차, 너무 높은 심사기준·비용 등) 또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 불인정 등

▷SPS : 농산품(신선농산물 포함), 가공식품 등과 관련된 과도한 기준 적용, 수입검역 조치, 수입농식품 사전통지 의무, 식품안전 인증기준 요구, 가공식품 원산지표기 요구 등 조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법령·법집행 미흡, 지식재산권 침해(특히 외국기업 관련) 방치 등

▷서비스장벽 :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국적요건·거주요건 요구, 면허·인허가 제한, 면허발급 지연·불투명, 면허·인허가 관련 경제적수요심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범위 제한 등 서비스의 수출·해외법인 설립 등 관련 제한 조치

▷투자장벽 : 과도한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외국인투자 이행 의무(국산품 사용 의무, 수출 의무, 내국인 일정 고용 의무 등) 부과, 경제안보 관련 투자 심사(FDI screening) 조치, 투자 이익금 해외송금 제한, 투자 관련 외국인 노동허가 제한, 투자 관련 출입국·비자 문제 등

▷환경 : 국제기구의 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해물질 배출 규제, 탄소중립 관련 제한, 포장재/플라스틱/배터리 규제, 환경 관련 화학물질 규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규제 등

▷노동 : 현지 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 이에 따른 현지 시장에서 수입품(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저하, 강제노동·불법 노동착취 문제 등

▷경쟁정책 : 경쟁법의 미흡, 외국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쟁법, 경쟁법의 특이사항·과도한 기준에 따른 제한, 국가독점사업 또는 국영기업 보호 조치 등

▷디지털무역 : 데이터·설비 현지화법,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디지털 관련 세제 등,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구 등

▷기타 : 수출제한·통제, 수출세 부과 등